

건설공사 산재보험료율

— $\frac{34}{1,000}$ 로 지난해보다 0.6% 상향조정 —

92년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이 일반건설공사 1천분의 34, 중건설공사 1천분의 44,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1천분의 47로 각각 확정됐다.

또 올해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의 29%, 중건설공사는 25%,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23%로 각각 결정됐다.

노동부가 확정된 92년도 업종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건설공사 노무비율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기준으로 1천분의 34로 결정돼 올해의 1천분의 28보다 0.6%포인트 상향조정됐으며 중건설공사는 1천분의 44로 올해와 같은 수준인 반면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올해(1천분의 56)보다 0.9%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이처럼 올해 일반건설공사의 보험료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3년간 주택 및 아파트건설 급증에 따른 대형산재의 폭발적 증가로 보험급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임금총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올해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건설공사가 총공사금액의 29%로 올해의 2%포인트, 중건설공사가 총공사금액의 25%로 올(22%)보다 3%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됐으나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3%로 오히려 올(24%)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따라서 올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현장은 공사내역서에 계상돼있는 임금총액에 공사별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

노동부는 임금총액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총공사금액에 각공사별 노무비율을 곱해 임금을 결정하되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때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 보험료를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체가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와 관련, 일반건설공사의 요율이 높아져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공사에 치중하는 업체는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게 됐으며 중건설공사와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는 요율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임금상승폭이 높아져 지급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올보다 소폭으로 부담이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올해 전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의 1천분의 16.4보다 0.3%포인트 높아진 1천분의 19.4로

확정됐다.

건설업등 전체업종의 올해 산재
보험료율은 표와 같다.

△1992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표

(단위 : 100분율)

**올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현장은
공사내역서에 계상돼있는
임금총액에 공사별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사 업 종 류	보험료율	사 업 종 류	보험료율
1. 광업		수제품 제조업	8
석탄광업	286	기타 제조업	19
금속 및 비금속광업	182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채석업	79	전기 및 가스업	6
석회석광업	53	수도업	4
재염업	8	4. 건설업	
기타광업	46	일반건설공사	34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26	중건설공사	44
생산업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 제조업	1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4
담배 제조업	6	자동차여객 운수업	13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8	소형자동차 운수업	1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38	화물자동차 운수업	40
목제품 제조업	29	수상운수업	28
펄프 및 지류제조업	21	항만하역업	30
신문화쇄발행 및 출판업	4	항공운수업	5
인쇄 또는 제본업	14	화물취급사업	33
경인쇄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4
화학제품 제조업	17	창고업	17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 제조업	5	통신업	5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4	6. 임업	
고무제품 제조업	11	벌목업	272
도자기제품 제조업	11	기타의 임업	4
유리제조업	10	7. 어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25	해면어업	19
시멘트 제조업	13	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	19
시멘트원료 채굴 및 제조업	23	양식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	기타의 어업	4
금속제련업	6	8. 농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28	일반농업	4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39	기계화농업	19
가공업		9. 기타의 사업	
도금업	26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16
기계기구 제조업	20	고층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9
전자제품 제조업	4	중기관리사업	27
선박 건조 및 수리업	34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8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5	기타의 각종사업	4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0		
기구 제조업			